

검 토 보 고

1. 청원현황

가.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 : 1996년 1월 24일 제96-1호

나. 청 원 인 :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100 유승인

다. 소 개 의 원 : 김진학 의원

라. 청 원 요 지

-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123-2, 6, 8번지 1,000m²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 도로 선형공사의 잔여토지로 간주하여 본도에서 취득하여 달라는 청원임.

2. 검토의견

가. 내 용 : 청원 라항과 동일

나. 검토의견

1) 도로공사등 공공시설 건설시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항의 규정과 등법 시행령 제9조 및 등법시행 규칙 32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50인 미만, 면적이 99,000m²미만의 경우는 토지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시행자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시행자인 도로관리사업소의 의견은 진여토지의 면적으로 보아 보상할 수 없다고 청원인에게 회신한 바 있으며 1,000m²의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

2) 본 토지와 연접한 유사 잔여토지 소유자의 경우 영농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
이라 하며 본 토지 진입을 위하여 3m 정도의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어 영농
에 어려움은 예상되나 경작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는 사료되지 않음.